

韓國 中央官署間의 交互作用에 關한 研究

趙錫俊*

《目

- 一. 研究의 目的과 對象
- 二. 研究의 方法
- 三. 部處間 定期報告資料의 分析
- 四. 中央官署間 委員會資料의 分析

次》

- 五. 結 果
 - 1. 定期報告分析
 - 2. 委員會分析
 - 3. 定期報告分析과 委員會分析
- 六. 結論 및 評價

<要 約>

本 論文의 研究目的은 韓國政府의 36個 中央官署間의 交互作用을 把握함으로서 政府活動의 中心이 어디에 있으며, 官署間의 權力地位體系가 어찌 한가를 알고자 하는데 있다.

交互作用을 알기위한 資料는 中央官署間의 定期報告와 二個以上의 官署가 代表되는 委員會에 關한 것이다. 이 두가지의 資料를 量的으로 處理하였다.

主된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政府活動의 中心은 經濟企劃院, 財務部를 包含한 內務部, 商工部, 建設部, 農水產部, 保社部, 科技處

의 8個 機關이다. 이들間의 權力地位體系도 이 記述의 順位와 같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行政管理的 官署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經濟企劃院, 財務部를 包含하여 總務處, 企劃調整室, 監查院, 調達廳, 行政調整室, 法制處 等의 8個 機關이며, 이들은 法制處를 除外하면 다 自己가 他機關에 提出하는 報告數보다 他機關으로 부터 받는 報告數가 더 많다.

이런 研究는 앞으로 部處間의 人力, 豐算規模의 配分, 管掌事務의 分析, 分下機關分析 等을 通하여 更욱 補強되어야 할 것이다.

一. 研究의 目的과 對象

本 論文은 韓國中央政府의 官署들 間에 일어나는 交互作用의 方向과 頻度를 알아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 問題를 研究의 目的으로 삼은 理由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筆者는 平素 부터 組織論 중에서도 組織을 權力(power)이 라는 立場에서 다루는 分野에

* 教授, 서울大 行政大學院

關해서 關心이 있다.¹⁾

學者들 중에는 既往부터 組織을 이런立場에서 다룬 사람들이 있었다. Weber의 官僚制論, 意思決定의 葛藤論, 리—더쉽 理論等은 특히 그런系列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權力의 問題를 直接的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또 그것이 主된 關心事 였던 것도 아니다.

近來에 와서 組織論者 가운데는 組織의 問題를 權力現象만으로만 把握하고 또 그것을 直接的으로 把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Emerson의 權力依存性論, Hickson, Hinings 等의 戰略的 依存條件論 等이 그 代表의 例라고 할 수 있다.²⁾

權力現象도 이것을 다루는 角度에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어떤 中央官署가 權力이 더 많을 것인가, 換言하면 어떤 官署가 他官署에 대하여 영향력을行使할 수 있는 潛在力を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關心을 갖고자 한다.

即 具體的으로 A가 B를 支配하는 現象을 直接的으로 觀察하기는 困難하며, 그럴 수 있는 可能性을 把握한다는 間接的인 方法을 使用하기로 한다. 이 問題는 어떤 機關이 他機關에 比하여 相對적으로 어느 만큼의 權力を 갖고 있는 가를 알아 내는 問題이다.

問題를 이렇게 把握한다면 이것은 機關間의 地位體系를 把握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本論文의 첫째 意義는 以上과 같이 機關間의 權力關係乃至 地位體系를 把握하는데 있다. 둘째로 우리는 政治學, 行政學, 組織論 等에서 흔히 機能的 接近法이니, 構造機能的 接近法이나 體制論的 接近法이니 하는 말을 많이 使用하여 왔는데, 이런 方面의 接近法을 韓國行政廳에 適用하기 위한 礎石的 作業을 하고자 하였다.

「構造」, 「機能」, 「體制」의 어떤 말을 使用하던지 간에, 이들에 있어서는 언제나 說明對象單位들 間의 「關係」를 把握하는 것이 必須의이며 優先的인 作業이다.

勿論 우리가 研究의 對象으로 어떤 자그마한 下部官署를 잡는다면 그속의 構成單位間의 關係把握을 통하여 以上的 接近法을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韓國中央政府의 行政府라는 것을 說明對象으로 잡았으며, 그럴 경우에 各中央官署間의 關係를 把握하는 것이 必須의이다.

아무튼 「構造」라는 概念도 한 單位다. 他單位間의 關係를 말하며, 「機能」의 概念도 作用乃至 「움직임」乃至 過程을 떠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作用이나 「움직임」의 方向과 內容이

1) 趙錫俊, 組織論, 全訂版, 서울, 法文社, 1977. 第5章, 第8章, 第9章 參照.

2) R.E. Emerson, "Power-dependence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 No. 1 (Feb. 1962), pp.31-41 그리고 D.J. Hickson, C.R. Hinings, C.A. R.E. Schneek and J.M. Pennings, "A Strategic Contingencies Theory of Intra-Organizational Powe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6, No.2, (June 1971), p. 216 그리고 C.R. Hinings, Hickson, J.M. Pennings and R.E. Schneek, "Structural Conditions of Intra-Organizational powe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9, No. 1 (Mach 1974), pp. 22-24.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것은 作用開始者와 被作用者間의 關係를 意味한다. 또 「體制」는 下位體制라는 概念을 由나서 說明할 수 없으며 여려 下位體制들간의 投入產出關係를 說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筆者는 平素부터 韓國行政組織을 說明하고자 하는 努力を 하여 왔는데, 中央官署間의 關係를 알고자 하는 것도 이런 努力의 一環이다.

특히 一般的으로 한 單位機關이 어떻게 운영되리라는 것은 比較的 容易하게 說明할 수 있다. 即 内部階序體制, 職級, 職制, 專決規程 等이 어느 機關에나 있기 때문에 이들 資料가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中央官署相互間에 어떤 關係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直接的으로 記述하는 資料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잘 알수도 없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대로 「權力關係」, 「構造」, 「機能」, 「體制」의 어느것을 우리나라 行政府全體에 適用하든 中央官署相互間의 關係를 記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 問題는 學者들에 의하여 時急히 다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行政府에 대한 動態的說明을 할려는 사람에게는 必須不可缺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二. 研究의 方法

한 機關이 어떤 權力を 갖고 있는 가를 흔히 다음과 같은 指標(indicators)들에 의하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即 그 機關의 ①豫算額, ②人力數, ③人力의 質, ④傘下機關의 數와 規模, ⑤監查權의 存否, ⑥行政各部의 羅列順位, ⑦社會的威信: 예를 들면 考試合格者의 志望率, 國會議員의 分科委志望率, ⑧事業內容 等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資料들이 우리에게 提供할 수 있는 것은 各機關間의 權力順位에 關한 情報라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權力順位를 中心으로 본 各機關間의 關係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各機關間의 關係를 좀 더 깊이 觀察할려면 單純한 權力 또는 地位上의 順位 뿐만 아니라 各機關을 動作시켜서 서로 交互作用하는 것을 把握하여야 한다.

問題를 이렇게 把握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에 關한 指標로 쓸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수 있다.

① 部處間人力의 流動

② 政府組織法이나 職制上의 管掌事務가 그 性格上 他部處와 連結되도록 되어있는 경우: 例로서 財務, 總務 其他的 Overhead Agency와 系線部處와의 關係, 外務, 內務 等과 같이 該部의 編成基準이 他機能部處들과는 전혀 다른 「地域」이라는 基準을 使用한 경우

③ 部處間 一般公文書의 移動

④ 一般閣議, 一般次官會議, 經濟閣議, 經濟次官會議

⑤ ④와 類似한 것으로서 二個以上의 機關을 構成員으로 하는 委員會

⑥ ③과 類似한 것으로서 部處間에 發生하는 定期報告

本研究의 題目을 「部處」間의 交互作用(interaction)이라고 잡은 것도 以上의 理由 때문이다.

그리고 交互作用指標로서 使用한 것은 上記 ⑤와 ⑥ 即 委員會와 定期報告의 資料이다. 「部處間의 人力流動」은 當場 資料를 求할 수 없었다. ②에 關한 것은 政府組織法이나 部處의 職別內容分析에 의하여 할 수 있다. 特히 總理直屬의 處속에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 項目 중에서 內務部와 他部處와의 關係中 各部長官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監督權을 媒介體로 하는 間接的關係에 대해서는 地方自治團體가 中央各部處에 提出하는 報告書量에 의하여 分析한 것을 이미 提示한 바 있다.³⁾ 勿論 이것만이 內務部와 他部處와의 關係를 다 說明하는 것은 아니다. 特히 Overhead Agency와 內務部本部와는 直接的인 接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外務部와 他部處의 關係에 대해서는 發表된 資料들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各部處의 海外駐在館派遣狀況資料를 통하여 外務部와 他部處와의 關係를 알 수 있을 것이다.

部處間의 報告를 除外한 一般公文書의 移動에 關한 것은 資料를 求得하기 困難하다. 이를 위해서는 最少限 各機關의 一年間의 公文書發送, 接受 및 件名을 알아야 하는데, 모든 機關의 文書受發簿를 수징 한다는 것은 不可能하였다.

一般閣議를 爲始한 類似장치에 대해서는 그의 公式的 側面에 關한 限, 그리고 部處間의 交互側面이라는 角度로서 보는 限,相當한 部分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本研究에서 使用한 ⑤와 ⑥의 方法에 關하여 그 資料의 性格 및 分析方法 等에 關해 節을 달리 하여 詳細히 說明하고자 한다.

三. 部處間 定期報告資料의 分析

現在 政府의 報告種類에는 定期報告와 隨時 또는 一回報告의 兩種類가 있다. 後者에 대해서는 이것의 濫發傾向 때문에 總務處에 設置된 報告統制官의 統制 即, 承認을 받아서 要求할 수 있게 되어 있다.

前者에 대해서는 다시 年報, 半年報, 期報, 月報, 週報, 卽報 等으로 나누어지고, 따라서 年間回數에 差異가 있다. 또 이들은 이미 全部 總務處의 承認을 一括的으로 받은 것들이며 하나 하나의 報告에 대해서 그때 그때 다시 總務處의 承認을 받을 必要는 없다.

3) 趙錫俊, 中央部處와 各級行政機關間의 機能分野別 接觸頻度에 關한 研究, 行政論叢, 14卷 2號, (1976), pp. 100-117.

玆 報告는 普通 下級機關이 上級機關에 提出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 特別地方官署, 中央直屬官署 等이 上級의 機關에 提出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同級機關間에 報告를 要求하거나 提出한다는 것은 不自然스런 概念이다. 그러나 中央官署가 監查院에 會計年度別로 내는 決算書, 調達廳에 提出하는 定期財物調查報告, 總務處에 내는 廢休紙處理結果에 關한 것 等은 定期報告로 간주되고 있다.

表 1. 中央官署間의 報告要求 및 報告提出狀況(表속의 數는 定期報告名數量 計함)

→報告要求機關

→ 報告 하는 機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企	行	經	總	科	援	內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監	道	計
		調	調	企	企	務	護	務	務	務	務	務	務	務	務	設	社	通	信	公	林	賣	達	稅	稅	務	振	產	振	團	動	道	查		
1. 企 行 經 總 科 援 內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企	調	■	4	3	19		1		11	1																								650
2. 行 企 經 總 科 援 內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行	調	■	1	■	3	19	1		11	1																							647	
3. 經 企 總 科 援 內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經	企	調	7	4	■	19	1		11	1																							654	
4. 總 企 科 援 內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總	企	調	9	4	3	■	19	1		11	1																					640		
5. 科 援 內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科	調	9	4	3	19	■	1		11	1																						659		
6. 援 內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援	調	9	4	3	19	■			11	1																						658		
7. 內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內	外	調	10	4	3	19	1	■	11	1																					660			
8. 外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外	財	調	9	4	3	19	1	■	11	2																					660			
9. 財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財	法	調	9	4	3	14	1	■	11	1																					1047			
10. 法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法	國	調	9	4	3	19	1	■	11	■																					658			
11. 國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國	文	調	9	4	3	19	1	■	11	1	■																				657			
12. 文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文	農	調	9	4	3	19	1	■	11	1	■																				659			
13. 農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農	商	調	9	4	3	19	1	■	12	1	■																				659			
14. 商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商	建	調	9	4	3	19	1	■	11	1	■																				760			
15. 建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建	保	調	9	4	3	19	1	■	11	1	■																				659			
16. 保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保	交	調	9	4	3	19	1	■	11	1	■																				659			
17. 交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交	通	調	9	4	3	19	1	■	11	1	■																				659			
18. 通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通	文	調	9	4	3	19	1	■	14	1	■																				763			
19. 文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文	山	調	9	4	3	19	1	■	12	1	■																				660			
20. 山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山	專	調	9	4	3	19	1	■	11	1	■																				659			
21. 專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專	調	9	4	3	19	1	■	11	1	■																					657			
22. 調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調	國	關	9	4	3	19	1	■	17	1	■																				862			
23. 國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國	關	兵	9	5	3	19	1	■	20	1	■																				667			
24. 關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關	兵	農	9	5	3	19	1	■	19	1	■																				668			
25. 兵 農 水 工 工 勞 鐵 道	兵	農	水	9	4	3	19	1	■	11	1	■	3																			662			
26. 農 水 工 工 勞 鐵 道	農	水	工	9	4	3	19	1	■	11	1	■																				664			
27. 水 工 工 勞 鐵 道	水	工	工	9	4	3	19	1	■	11	1	■																				659			
28. 工 工 勞 鐵 道	工	工	勞	9	4	3	19	1	■	11	1	■																				659			
29. 工 勞 鐵 道	工	勞	鐵	9	4	3	19	1	■	11	1	■																				660			
30. 勞 鐵 道	勞	鐵	監	9	4	3	19	1	■	11	1	■																				659			
31. 鐵 道	鐵	監		9	4	3	19	1	■	5																						15			

本究究에서 對象으로 한 것은 中央官署相互間에 發生하는 報告中에서 定期報告뿐이다.

1回 報告는 總務處의 報告統制官의 年間處理結果를 알아야 한다는 不便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루지 못했다.

定期報告에 關하여는 總務處가 發行한 定期報告目錄集(1975. 8)을 分析하였다.

이 資料속의 報告는 大部分 下級機關이 上級機關에 提出하는 報告이나, 또 同時에 明示的 또는 默示的으로 中央官署相互間에 해야 할 報告도 包含하고 있다.

이 資料는 報告 各種別로 報告種別(年報, 月報, 週報 等의 區別), 最初作成機關, 經由機關, 綜合機關, 最終受報機關으로 分類되어 있다.

따라서 中央官署間의 報告라는 것은 最終受報機關이 中央官署이면서 同時에 最初作成機關, 經由機關, 綜合機關中의 어느 하나以上이 亦是 中央官署인 경우를 意味한다.

이런 定義에 의하여 最終受報機關別로 어떤 部處로 부터 報告를 받는가를 檢討하고, 다시 報告하는 機關別로(한 機關이 最初作成機關, 經由機關, 綜合機關中의 어느 하나인 경우) 어떤 機關에 報告를 提出하는가 하는 것을 檢討하였다.

이때 報告名으로 미루어 본 報告內容, 報告種別로 본 年間件數는 分析對象에서 除外하였다. 換言하면 分析對象이 된 것은 報告名의 頻度이다.

例를 들면 最終受報機關인 總務處는 어떤 中央官署로 부터 어떤 報告名의 報告를 받는가를 檢討하면 總務處가 받는 모든 報告名의 總頻度와 그것의 각 中央官署別 分布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꾸로 總務處가 어떤 中央官署에 몇개의 報告를 提出해야 하는가를 把握하고, 이를 合하면 總務處가 각 中央官署에 提出하는 모든 報告名數가 나올 것이다.

이런 方法에 의하여 分析한 것이 表 1이다.

表 1에 立脚하여 他 中央官署로 부터 報告를 받는 일이 있는 中央官署만 別途로 골라서, 受報 報告名數頻度에 따른 이들間의 順位를 分析한 것이 表 2이다.

表 2. 他中央官署로 부터 報告받는 中央官署의 報告名數頻度와 順位

他中央官署로부터 報告받는 中央官署名	報告名數頻度	順位	他中央官署로부터 報告받는 中央官署名	報告○數頻度	順位
總務處	546	1	法務部	31	8
財務部	352	2	援護處	29	9
企劃調整室	252	3	農水產部	4	10
監查院	194	4	國防部	3	11
調查廳	150	5	交通部	2	12
行政調整室	118	6	建設部	1	13
經濟企劃院	87	7	內務部	1	14

* 여기에 包含되지 않은 中央官署는 他院, 部, 處, 廳으로부터 定例報告를 받는 일이 없음.

四. 中央官署間 委員會資料의 分析

本研究에서 使用된 資料의 性格은 다음과 같다. 中央官署制로 設置된 委員會로서 그 設置根據가 大統領令以上에 의한 것만을 對象으로 하였다.

이 資料는 1975年末 現在의 것이며 委員會名稱, 委員名, 委員長選出方法, 開催實積 等이 記錄되어 있다.

1975年末 現在 中央官署에 設置된 委員會 總數는 373個이다. 이 중에서 未構成 4個와 1973, 1974年間에 開催實積이 한번도 없는 委員會 117個를 除外하였다.

뿐만 아니라 研究의 目的에 비추어서 單一中央官署內의 職員들만으로서 構成되었거나 또는 單一中央官署의 職員과 民間人們만으로 構成된 것도 除外하였다. 이런 純粹團體委員會의 數는 128個였다.

結果的으로 既構成된 것으로서 開催實積이 있고, 同時에 他中央官署의 代表를 參席시키게 되어 있는 委員會 124個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分析方法은 다음과 같다. 우선 委員會召集側機關(委員會設置官署)別로 위의 124個 委員會의 委員構成內譯을 檢核하여 他中央官署의 代表를 參加시킨 것이 있으면, 同他中央官署名에 의하여 記錄한다. 그 結果로 召集側官署의 立場에서 보면 他官署를 自己의 委員會에 代表시키는 他中央官署別 頻度가 나오게 된다.

한 他官署가 代表되는 職位를 보면, 長官, 次官, 企劃管理室長, 次官補, 局長, 課長 等이 있으나, 이런 階級의 差異는 考慮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 委員會의 所官事項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分析對象에서 除外시켰다. 그 理由는 量的 分析에 限定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또 一回 以上的 開催實積이 있으면 모든 委員會를 꼭 같이 取扱하였다. 다시 말하면 委員會가 73, 74年度中에 100回 開催되었건 1회 開催되었건 이를 같이 取扱하였다.

以上을 提言하면 委員會의 무게나 그 開催頻度는 考慮對象에서 除外되었다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本分析은 召集側에서 볼 때 自己官署에 設置된 委員會中에서 實際로 活動하는 委員會에 어떤 他官署를 代表시키고 있는가를 意味한다.

例를 들어서 經濟企劃院을 召集側으로 볼 때 經濟企劃院에 設置된 委員會中에서 開催實積이 있는 委員會들에 어떤 中央官署들이 自己의 代表를 派遣할 수 있게 하여 놓고 있는가를 意味한다.

이렇게 召集側을 中心으로 分析하면 同時に 被召集側의 結果도 나을수 있다. 例를 들어서 經濟企劃院은 中央政府의 어떤 他官署의 몇개 委員會에 自己의 代表를 派遣할 수 있는

表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計
他官署의委員會에 參席하는 官署																																						
1 法制企	■	1	5																																	6		
2 經企	■	6	4			3		8	1	1	1	6	12	3	3	1		1	2	1		1	1											56				
3 總務	1	■	3	2			2		1	1		2	1			1						1											15					
4 科技	4	4	■		1	1			1	2	1	4	1	2		1						2	1										27					
5 援護	1	3	■						1	1												1											8					
6 內務	4	7	3	1	■		2	3	3		1	4	4	8		2		3				2	1										49					
7 外務	1	5	1		■	1	2	1	1		4	9	3	3	1	2	1		2	1		1	2										23					
8 財務	6	7	3	2	2	1	■		1	1	4	9	3	3	1	2	1		1		1	1											52					
9 法務	1	7	1	1			1	■	2		2	3						1			3	1										24						
10 國防	1	4	1	2	1		2	2	■	3	1	2	5		1		1		1		2										30							
11 文教	1	6	5	1	1	1	1			■			1	5			1		1			2										27						
12 農水	6	6	2	2		8			1	■	6	2	3		1			2		1	1	1	1								43							
13 商工	7	3	4	1		9	1		2	■	1	2		1			1		1	1	6	2									43							
14 建設	5	5	4	1	3		1	1	1	1	2	■	3		1			3													34							
15 保社	3	6	1	1	3	1	1	1	2	3	3	■					1		1	1	1									29								
16 交通	3	5	2	1			1			3	4	3	■	1			1														27							
17 電信	2	5	3	1	1	3				2	1	1		■																	20							
18 文公	1	3	1	1	1	1			1	1	2	5		1	■	1															19							
19 統一	1	3						1								1	■	1														5						
20 山林					1			1			2	1	1																		6							
21 專賣		1									1										1										3							
22 調達			1																	2	1		1								4							
23 國稅	2									1	1			2						2	1	1								9								
24 關稅																					1										4							
25 兵務																					1										1							
26 農振			1	1							1	4																			7							
27 水產	1	1	1								2	3										1	1								10							
28 工振		2										3		1																	6							
29 工團												1																			1							
30 勞動				1																	2										6							
31 鐵道																																1						
32 特許																																0						
33 港灣									1																						0							
34 檢察																																1						
35 行調	1	2	2							1	1	1	1	2	1			1												9								
36 企調	1	2																													8							

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分析表가 表 3이다.

이 表에 의하면 委員會召集側(橫柚)의 機關을 縱의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어떤 他機關을

몇개의 自己委員會에 代表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同時에 被召集側(縱軸)의 機關을 橫的으로 읽겨 가면서 보면 各 中央官署마다 어떤 他中央官署의 몇개의 委員會에 代表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表 3에 立脚하여 만들어진 것이 表 4, 表 5, 表 6 等이다. 表 4에 의하여 召集側에서 본 頻度의 順位이다. 바꿔 말하면 한 中央官署가 얼마나 자주 他 中央官署를 自己의 委員會에 代表시키는가에 關한 順位를 알 수 있다.

表 4. 한 中央官署가 他中央官署를 自己의 委員會에 參加시키는 頻度의 順位—召集側

機 關	總務	工商	保企	經財	財務	建社	農務	內務	關稅	山務	兵防	國教	文務	援信	法務	遞信	特許	勞動	文團	工公	調達	外務	農務	交通	國稅	法制	統一	專賣	水產	工務	鐵道	檢察	行調	企管	
頻 度	96	70	55	53	45	42	31	25	21	21	19	18	16	12	12	12	9	8	7	7	4	3	3	2	1	0	0	0	0	0	0	0	0	0	0
順 位	1	2	3	4	5	6	7	8	9	9	9	10	11	12	13	13	13	14	15	16	16	17	18	18	19	20	21	21	21	21	21	21	21	21	

表 5. 한 中央官署가 他中央官署의 委員會에 參席하는 頻度와 順位—被召集側

機 關	經企	財務	內務	農務	工商	建社	國務	保稅	科防	文教	交通	法務	外務	遞信	文務	總務	水務	農務	行稅	援調	企務	農務	法務	山務	工務	勞動	調達	關稅	專賣	兵務	工務	鐵道	勞動	檢察	許可	企管
頻 度	56	52	49	43	43	34	30	29	27	27	27	24	23	20	19	15	10	9	9	8	8	7	6	6	6	5	4	4	3	1	1	1	1	0	0	
順 位	1	2	3	4	4	5	6	7	8	8	8	9	10	11	12	13	14	15	15	16	16	17	18	18	18	19	20	20	21	22	22	22	23	23	23	

表 6. 召集側+被召集側 頻度와 順位

機 關	商工	總務	經企	財務	保稅	內務	農務	工商	建社	國務	文教	法務	遞信	交通	山務	外務	關稅	兵務	援護	水務	農務	特許	勞動	調動	工團	企達	法調	統一	專賣	鐵道	檢察	企管				
頻 度	113	111	109	97	84	70	69	68	65	48	43	36	32	29	27	26	26	25	20	20	10	10	10	9	9	9	8	8	8	6	6	5	3	1	1	0
順 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17	18	18	19	19	19	20	20	20	21	21	22	22	23	24	25	25	26	

表 5는 꼭 같은 것을 꺼꾸로 考察한 것이다. 即 被召集側에서 볼 때 한 中央官署는 他 中央官署의 委員會에 얼마나 자주 代表되는가에 關한 順位를 나타낸다.

表 6은 召集側과 被召集側을 合해서 計算한 경우의 頻度와 順位를 나타낸다. 이 表에 의하여 大韓民國 中央官署들 間에 所謂 接觸活動의 中心이 어디에 있는가를 推測할 수가 있다.

五. 結 果

1. 定期報告分析

表 1을 橫的으로 읽으면 어떤 中央官署든지 完全空欄인 官署는 없다. 그러나 이를 縱的으로 읽으면 完全空欄인 官署와 거이 모든 칸이 메워진 官署의 兩種類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報告提出機關이라는 側面에서는 어떤 中央官署는 平均 56種의 報告書를 他中央官

署에 提出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例外는 監査院 뿐이다.

監査院을 除外하면 各機關마다 提出해야 하는 報告名數의 幅에 많은 差가 없다. 最少 40부터 書大 69이다. 이것은 大部分의 報告라는 것이 報告받는 機關에 의하여 一律的으로 要求된다는 것을 뜻한다.

報告要求쪽에서 보면 他中央官署에 대하여 報告를 要求할 수 있는 機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企劃調整室
- ② 行政調整室
- ③ 經濟企劃院
- ④ 總務處
- ⑤ 援護處
- ⑥ 財務部
- ⑦ 法務部
- ⑧ 調達廳
- ⑨ 監査院
- ⑩ 內務部
- ⑪ 國防部
- ⑫ 農水產部
- ⑬ 建設部
- ⑭ 交通部

이들이 要求하는 報告頻度와 順位를 나타낸 表 2를 보면 7位까지의 機關과 8位의 機關間에 頻度值의 差가 큰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7位까지를 最多頻報告要求機關이라고 부르고 이를 順位別로 羅列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總務處
- ② 財務部
- ③ 企劃調整室
- ④ 監査院
- ⑤ 調達廳
- ⑥ 行政調整廳
- ⑦ 經濟企劃院

이들 7個 機關은 위의 14個 機關들 中에서 그 性質上 共通點을 갖고 있다. 即 이들은 所謂 말하는 企劃部署, 調整部署, overhead部署, 統制部署의 性格을 갖고 있으며, 한마디로 行政管理一般的인 性格을 多分히 內包하고 있는 機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比하여 餘他機關들은 政府의 特定事業分野를 管掌하는 系線部署들이며, 系線的事業과 關聯하여 他中央官署로 부터 報告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餘他機關中에는 部가 自己所屬廳으로 부터 받는 定期報告를 받는 것이 包含되어 있다. 即 農水產部가 農振廳으로 부터 받는 報告, 國防部가 兵務廳으로 부터 받는 報告, 交通部가 鐵道廳으로 부터 받는 報告 等이 그것이다. 餘他機關中에서 모든 他中央官署에 대하여 報告를 要求하는 系統官署는 法務部(外國人管理)와 援護處(援護對象者就業)뿐이다.

以上과 같은 結果가 暗示하는 것은 報告에 關한限 7個의 行政管理的 機關이 가장 많은 것을 要求하며, 法的으로 總理直屬으로 있는 援護處는 明白히 系線機能機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中央政府에서 行政管理 乃至 overhead機關을 들라면 以上的 7個機關에 法制處를 合한 8個機關을 들어야 할 것이다.

2. 委員會分析

表 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 수 있다.

첫째로 以下의 中央官署들은 自己官署의 運營에 있어서 他中央官署를 委員會에 代表시킬 必要性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換言하면 以下是 主觀的으로는 獨立運營이 可能하다고 判斷하고 있는 機關들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法制處
- ② 統一院
- ③ 專賣廳
- ④ 水產廳
- ⑤ 工振廳
- ⑥ 鐵道廳
- ⑦ 檢察廳
- ⑧ 行政調整室
- ⑨ 企劃調整室
- ⑩ 港灣廳

둘째로 總 36官署의 上記 三分之一 以上에 關 있는 12官署를 順位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總務處
- ② 商工部
- ③ 保社部
- ④ 經濟企劃院
- ⑤ 財務部

- ⑥ 科技處
- ⑦ 建設部
- ⑧ 農水產部
- ⑨ 內務部
- ⑩ 國稅廳
- ⑪ 山林廳
- ⑫ 兵務廳

이들 官署中에서 各廳은 上記 定期報告의 경우와는 달리 여려 中央官署를 自己의 委員會에 代表시키고 있다. 또 上記 첫째類型의 官署中에서 自己運營에 他官署를 代表시킬 必要는 없지만 他官署의 운영에는 代表되어야 할 性質의 것들이 있다. 이것은 表 5에 의하여 잘 나타난다.

即 表 5에 의하면, 企劃調整室, 行政調整室, 法制處, 工振廳, 水產廳 等은 매우 자주 他官署의 委員會에 代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4, 5, 6에 의하여 또 알 수 있는 것은 港灣廳, 專賣廳, 統一院, 鐵道廳, 檢察廳 等은 어느 쪽으로 보나 가장 獨立運營이 可能한 組織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表 5에 의하여 他中央官署의 委員會에 代表되는 官署들을 上記 三分之一線인 12位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經濟企劃院
- ② 財務部
- ③ 內務部
- ④ 農水產部
- ⑤ 商工部
- ⑥ 建設部
- ⑦ 國防部
- ⑧ 保社部
- ⑨ 科技處
- ⑩ 文教部
- ⑪ 交通部
- ⑫ 法務部

他官署를 自己의 委員會에 代表시키는 部處와 自己가 他官署에 代表되는 部處를 合한 表 6의 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上記 三分之一線인 12位까지의 機關은 다음과 같다.

- ① 商工部

- ② 總務處
- ③ 經濟企劃院
- ④ 財務部
- ⑤ 保社部
- ⑥ 內務部
- ⑦ 科技處
- ⑧ 農水產部
- ⑨ 建設部
- ⑩ 國防部
- ⑪ 文教部
- ⑫ 法務部

이제 召集側이나 被召集側 함께 12位 以內에 있는 官署들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商工部
- ② 經濟企劃院
- ③ 財務部
- ④ 保社部
- ⑤ 內務部
- ⑥ 科技處
- ⑦ 農水產部
- ⑧ 建設部

以上 8個 官署는 우리나라의 中央官署 가운데서 官署間의 接觸의 中心이 되는 機關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中央行政官署中에서 以上的 8個가 가장 核心的인 位置에 있는 官署들이라고 할 수 있다.

總務處는 他機關을 自己의 委員會에 代表시키는 面에서는 斷然 1位에 있으나, 他機關에 의하여 必要로 되는 面에서는 13位로 떨어지기 때문에, 召集, 被召集 即 交互作用의 雙方에서 볼때에 以上的 8個 機關程度로 政府機關의 中心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이들 8個 機關속에는 廳은 하나도 없으며 處中에서는 科技處가 包含되어 있다.

部中에서 比較的 獨自의 運營을 하고 있는 곳은 文公部, 外務部, 交通部, 遞信部 等이라 고 말할수 있다.

3. 定期報告分析과 委員會分析

이제 定期報告分析의 結果와 委員會分析의 結果를 함께 보면서 中央官署들의 性格을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他中央官署로 부터 報告를 받는 것도 많으며 同時에 上記 8個의 中心機關에 屬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財務部

② 經濟企劃院

他中央官署로 부터 報告를 받는 것도 많으며, 同時에 他中央官署를 自己의 委員會에 많이 參席시키는 機關으로서 위의 財務部와 經濟企劃院을 除外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總務處

他機關에 報告를 要求하는 일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으면서도 委員會 운영 面에서 政府의 中心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上記 8個 機關에 屬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商工部

② 保社部

③ 內務部

④ 科技處

⑤ 農水產部

⑥ 建設部

以上의 6個 機關을 包含한 8個 中心機關의 委員會召集側의 順位와 被召集側의 順位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7.

	召集側順位 (A)	被召集側順位 (B)	A-B		召集側順位 (A)	被召集側順位 (B)	A-B
商 工 部	2	5	-3	農 水 產 部	8	4	4
保 社 部	3	8	-5	建 設 部	7	6	1
內 務 部	9	3	6	經 濟 企 劃 院	4	1	3
科 技 处	7	9	-2	財 務 部	5	2	3

이제 委員會라는 것은 所管部處에서 設置할 때에 他部處를 自發的으로 代表시킨다고 할 수 있다. 即 하나의 部處가 他部處의 委員會에 代處되기를 要求하기 때문에 後者の 委員會에 들어가는 事例는 드물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한 部處가 他部處를 自己의 委員會에 代表시킨다는 現象은 前者が 後者에 依存하는 關係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上記 表 7에서 召集側順位는 매우 높으면서 被召集側順位는 매우 낮은 機關은 權力構造面에서 相對的으로 下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例가 保社部이다.

反面에 같은 表에서 召集側順位는 매우 얕으면서 被召集側順位는 매우 낮은 機關은 權力構造面에서 上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가 內務部이다.

参考로 經濟企劃院과 財務部의 委員會召集, 被召集順位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그 間에 큰

差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제 以上에 의하여 8個 中心機關間의 權力構造上의 順位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判斷한다.

- ① 經濟企劃院
- ② 財務部
- ③ 內務部
- ④ 商工部
- ⑤ 建設部
- ⑥ 農水產部
- ⑦ 保社部
- ⑧ 科技處

他機關에 대하여 報告를 要求하는 일도 없고, 他機關을 自己의 委員會에 參席시키지도 않으며, 同時에 他機關의 委員會에 參席할 수도 없는 機關을 政府權力構造面에서 最下位에 있는 것으로 편의상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機關은 港灣廳, 鐵道廳 等이다.

六. 結論 및 評價

以上의 分析에 의하여導出된 主要結論들만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中央政府 各 院部處廳에는 以下 8個의 中央行政管理機關이 있다.

- ① 總務處
- ② 財務部
- ③ 企劃調整室
- ④ 監查院
- ⑤ 調達廳
- ⑥ 行政調整室
- ⑦ 經濟企劃院
- ⑧ 法制處

같은 總理直屬의 處中에서도 援護處, 科技處는 系線機關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中央官署들 間의 接觸 또는 交互作用에 關한 活動의 中心機關은 以下の 8個이며 이들間의 權力構造를 上下順位로 羅列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經濟企劃院
- ② 財務部

- ③ 內務部
- ④ 商工部
- ⑤ 建設部
- ⑥ 農水產部
- ⑦ 保社部
- ⑧ 科技處

3. 經濟企劃院과 財務部는 報告를 通한 接觸과 委員會를 通한 交互作用의 兩側面에서 함께 核心的인 存在라고 할 수 있다.

4. 모든 中央官署間의 相互交互作用에서 比較的 除外되어 孤立되어 있는 機關들은 다음의 것들이며, 이들이 政府權力構造의 最下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港灣廳
- ② 鐵道廳

5. 總務處는 他中央官署로 부터 報告를 받는 것도 많으며, 同時에 他中央官署를 自己의 委員會에 代表시키는 것도 많으나, 反面에 他機關의 委員會에 代表되는 것은 적다.

總務處가 이와 같이 報告要求面이나 委員會召集側에서 過度하게 代表되는 理由는 同處가 報告整理 및 委員會評價에 關한 權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以上 5가지의 主結論을 이 研究에서 導出 하였다. 이 結論들은 大體的으로 既存의 常識과도 맞는 것으로 생각 된다.

또 常識만을 갖고는 알 수 없는 것도 一部 開發하였다고 할 수 있다.

以下에서는 이런 研究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며, 앞에 내세운 目的에 비추어 그 成果를 어떻게 보는가의 問題와 앞으로의 研究方向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定期報告의 分析에서는 우리나라 中央官署中에서 行政管理的 機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 援護處, 科技處 等은 關係機關이면서 不自然스럽게 總理直屬으로 配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튼 行政管理的 機關들은 自己의 所管에 모든 中央官署로 부터 報告의 提出을 받는 機關들이다. 뿐만 아니라 自己가 他官署에 提出하는 報告數보다 自己가 他官署로 부터 받는 報告의 數가 많은 機關들이라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는 地位體系上 低位에 있는 機關이 높은 機關에 報告를 提出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 운영면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例를 들어 總務處나 調達廳이 商工部나 內務部보다 優位에 있다고 할수는 없다.

定期報告라는 것이 公式的인 制度이며 따라서 報告를 받는 機關과 提出하는 機關의 差異도 公式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報告를 받는 權限은 潛在的으로 權力行使의 手段으로서 使用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本研究의 定期報告分析이 뜻하는 것은 報告提出이라는 接觸通路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를 通한 交互作用을 알 수 있게 하여준데 意義가 있다.

다음으로 委員會分析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委員會召集側官署가 他機關을 必要로 할 때 委員으로 代表시키며, 따라서 여러 他官署의 委員會에 代表된다는 事實自體가 權力體系上의 後者の 地位가 높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마치 個人이 여러 機關의 초대를 받아서 여러곳에 關聯되어 있을수록 그 사람의 地位의 높음을 나타낸다는 理論과 같다.

또 어떤 官署든지 他官署의 干涉을 받지 않고 完全한 自律性을 享有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前提를 세운다면 한 官署는 他官署를 自己의 委員會에 代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召集側에서 높은 機關이 반드시 權力地位體系上으로도 높은 機關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交互作用頻度와 方向에 關한 關心을 表現하기 위하여, 召集側과 被召集側을 合算하여서 어떤 官署들간에 主된 交互作用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主된 交互作用을 하는 官署들이 政府운영의 主된 舞臺이며, 主舞臺의 配役을 맡은 官署들이 地位體系上으로는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勿論 이들 間에도 다시 地位上의 差異가 있음을 알았다.

政府운영의 가장 核心은 經濟企劃院, 財務部를 包含한 內務部, 商工部, 建設部, 農水產部, 保社部, 科技處 等의 8個 官署이며, 이를 支援해주고, 調整하고 統制하는 것이 經濟企劃院, 財務部를 包含한 總務處, 企劃調整室, 監查院, 調達廳, 行政調整室, 法制處의 8個 官署라고 할 수 있다. 重複된 2個 官署를 빼면 總 14個 官署이다.

勿論 이들 以外에도 國防部, 外務部, 文教部, 法務部, 交通部, 遷信部, 文公部 等의 7個 機關도 매우 重要한 地位를 갖고 있다. 表 3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委員會를 通한 官署間의 接觸에 關한 限, 總務處, 科技處, 經企院, 內務, 外務, 財務, 法務, 國防, 文教, 農水產, 商工, 建設, 保社, 交通, 遷信, 文公部 等의 1院 13部 2處에 頻度가 集中되어 있다.

他院處, 廳, 室 等은 上記 諸 官署들의 周邊官署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제 以上과 같은 研究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 繼續 補完을 要한다. 첫째로 各官署의 所管事務를 把握하여서 權力體系에 關한 判斷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為해서는 職制分析도 重要하지만, 그 以外에도 官署의 管掌民願事務를 檢討하고 方法, 이 研究에서 다른 定期報告나 委員會를 量的으로만 다루지 말고, 報告名과 委員會機能까지 함께 考慮해서 質的인 判斷을 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本研究에서는 報告中에서 定期報告만 다루었지만 交互接觸關係의 좀더 完全한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隨時 또는 一回 報告도 檢討를 要하고, 또 더 重要한 것은 報告以外의 一般公文書의 往來方向과 頻度를 알 必要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各官署의 文書受

發簿에 대한 分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權力의 指標로 使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쉽게 量的 分析이 可能한 것을 各官署別로 整理한 人力과 豫算에 關한 資料의 分析이라고 할 수 있다. 最少限 兩者的 規模에 의한 官署間의 順位配列이나마 重要한 暗示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各 中央官署別로 傘下機關 및 團體의 種類, 規模 等을 알면 官署間의 地位體系의 整理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以上에서 中央官署間의 交互作用을 다루었지만, 政府 운영의 本來의 樣相은 縱的, 階序的이라는 점이다. 各 官署마다 獨立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原則이다. 交互作用이라는 것은 例外的으로만 있을 뿐이다. 特히 系線官署들 間, 그리고 行政管理的 官署들 間에 있어서 그속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開發問題가 더욱 複雜化, 專門化하는 추세에 맞추어 政府안에서는 各部處를 共通으로 연계하는 일들이 더욱 더욱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種類의 問題로서 港灣行政, 空港行政, 青少年善導, 物價團束, 消費者保護 等의 여러 分野에서 겪어왔다.

따라서 現在 例外的으로나마 存在하는 交互作用을 發見하면 이것이 새로운 交互作用을 設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現存하는 權力地位體系의 把握은 이런 交互作用의 設計에 있어서 願하는 方向感覺을 提示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現在 孤立되어서 自律的으로만 운영되는 組織을 새로운 交互作用網으로 等을 것인가 또는 現狀대로 存置시킬 것인가에 대한 暗示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特히 所管事務의 性格이 各部處에 關聯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孤立되어 있는 機關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例를 들어 港灣廳이나 工團廳의 業務와 운영方式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自律的 機關인 港灣廳과 專賣廳中에서 後者보다 前者が 여러 部處와 連結되어 있는 業務를 管掌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當爲的 要求에 비추어 現存하는 航運廳이 自己 組織의 自律化를 위하여 그의 使命을 狹義로 解釋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檢討할 必要도 있을 것이다. 또 그의 職制上 이런 要求를 反映한 것이 아닌가 하는 檢討도 可能할 것이다.

아무튼 交互作用에 關한 研究는 組織設計乃至 實務家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 方向의 研究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期待하는 바이다.